

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

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대상자에게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6. 6. 11.



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지청장

- 건 명: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
- 근 거: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, 제12조제5항, 제29조제1항제9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1호
-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연 번	성명	생년월일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 내용			송달 불능 사유	주소
				처분 제목	처분 사유	처분 내용		
1	김O진	96.3.8	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	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	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필수대면상담 출석통보일자에 방문하지 않아 국민취업지원제도 종료 및 재참여 제한	○ 취업지원 종료 처분에 따른 의견제출 요청 ○ 종료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3년간 취업지원 신청 제한(3년간 재참여 제한)	폐문 부재	충북 증평군 (이하생략)

4. 공고기간: 2026.06.11. ~ 2026.6.26.(15일간)

5. 기타사항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고용센터 진재원(Tel. 043-230-6766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